

의안 번호	2543	【 옥외광고물(가로등현수기)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】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. 1. 19.(월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6. 1. 19.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6. 2. 4.(수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2026. 3. 31.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옥외광고물(가로등 현수기) 운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,
- 『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위탁시설 : 강북로 등 10개 구간 가로등현수기 355조
- 위탁사무의 범위
 - 가로등현수기 이용 신고수수료 및 도로점용료 등 납부
 - 민원서류 접수 대행, 가로등 현수기 게시 및 철거 등
- 수탁자 선정방법 : 공개모집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사
- 위탁기간 : 2026. 4. 1. ~ 2029. 3. 31. <3년>

다. 근거법규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박미숙)

- 본 동의안은 가로등 현수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임.
- 소요예산은 별도 위탁료 없이 대행 수수료로 운영되며 제반 규정을검토한 바, 법령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[근거법규]

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6조 (승인 및 동의)

-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(최초위탁, 재위탁, 재계약 포함)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,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,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를 긴급하게 선정해야 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 1. 위탁기간 1년 이하의 1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
 2. 청소, 방호 등 연례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